

의안 번호	제3627호
----------	--------

김포시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1. 심사경과

- 가. 제안일자 및 제안자 : 2025년 5월 23일 김포시장
- 나. 회 부 일 자 : 2025년 6월 2일
- 다. 상 정 일 자 : 2025년 6월 19일
- 라. 의 결 일 자 : 2025년 6월 19일

2. 제안이유

- 「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」에서 조례에 위임하고 있는 교통사업자, 특별교통수단을 운행하는 운전자, 택시 운수종사자에 대한 교육과 관련된 사항을 구체화하여 규정하고자 이 조례를 개정함.

3. 주요내용

- 가. 교통사업자 등에 대한 교육 실시 의무 규정 및 교육 대상 및 내용 규정 (안 제18조제1항)
 - 교통사업자: 이동편의시설 설치 및 관리 등에 관한 교육
 - 특별교통수단 운전자: 교통약자 서비스 교육, 성폭력 예방교육
 - 택시운수종사자: 교통약자 서비스 교육
- 나. 교육의 방법에 관하여 규정 (안 제18조제2항)
- 다. 교육 위탁 및 경비 지원 근거 규정 (안 제18조제3항)
- 라. 그 밖에 용어 등 정비

4. 질의 및 답변요지 : 생략

5. 토론요지 : 생략

6. 수정안의 요지 : 없음

7. 심사결과 : **원안가결**

8. 소수의견의 요지 : 생략

9. 주문사항 : 해당 부서에서는 교통사업자, 특별교통수단 운전자 및 택시 운수종사자에 대한 필수교육을 철저히 실시하여, 교통약자에 대한 서비스 의식 제고와 성폭력 예방에 실질적인 기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교육 수료 여부에 대한 철저한 점검과 관리가 필요함.

10. 심사보고서 첨부서류 : 없음.